

【 14 】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12. 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회현상 변화 등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고,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중 일부를 반영하고
-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비의 증가로 누적되는 적자의 보전과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수도 시설의 설치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의 3)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 변경(안 제8조)
- 급수공사비를 정액제에서 실시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징수(안 제10조)
- 수도물 다량 수요사업에 대하여는 협약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안 제11조의 2)
-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9.9% 인상)(안 제26조)
- 업종별 구분표 조정(안 제27조 "별표3")
- 수수료 및 손료의 인상(안 제36조, 제42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수도법 제17조”를 “지방자치법 제 15조 및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제2조(정의)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 하는 시설로서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등 총체를 말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제2호중 “5호”를 “20세대”로 한다.

제2장 제목중 “비용”을 “규정”으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제2항중 “선납”을 “납부”로, 제3항중 “선납된”을 “납부된”으로 하고, 제4항중 “급수공사”를 “급수신청”으로 하며, 제6조의 3 및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 3(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 급수구경 75밀리미터이상 건축.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②군수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중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 4(중수도설치 신고 및 확인) ①제8조제1항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군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중수도 사용계획서
- 2 . 처리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 3 .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 4 .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②군수는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제2항중 “관급함”을 “관급으로 함”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5항중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 있다” 를 “자재를 검사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있다.”로 한다.

제7조의 2(준공검사등)제1항중 “보고”를 “요청”으로,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 하고”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가 준공검사 입회를 원할때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할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를 대행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이하 “검정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항 제1호중 “2,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제2호중 “1,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제3호중 “2,000원”을 “100,000원”으로 “1,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산출방법) 제1항중 단서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장치 개

량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부담한다. 단, 중설(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수수료등 포함) 등의 합계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전항에 지정된”을 “제1항에 규정된”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제3항중 단서조항과 제4항을“삭제”하며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원인자 부담금) ①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할수 있다.

1. 주거시설 :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집단개발 주택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 m²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 유통시설 : 건축 연면적 1,000 m² 이상
6. 기타시설 : 건축 연면적 2,000 m²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용지 조성 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

②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군수와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제1항중 “별표1”을 “별지” 와 같이하고 “전조”를 “제11조 규정”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가 또는 양주군이 설치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제2항중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를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며”로 하고 제3항중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제1항중 “수도사용자등은”을 “다량의 수도사용자에게”로 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게 할수 있다”로 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제1항중 “철거의 공사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을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규정”을 “제1항 규정의”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수보증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중 제1항을 다음과 한다.

①공설공용급수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에서는 판매 할수 없다.

동조 제3항중 “공설공업급수장치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제목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을 “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으로, 제2항중 “매설”을 “매설 또는”으로,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을 삭제하며, 제4항중 “동거인의”를 “동거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로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제1항중 “기본요금”을 “수도요금”으로, 제2항중 “3개월”을 “3월”로, 제3항중 “가 내지 바”를 “1 내지 6”으로 하고, 제6호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3개월”을 “3월”로 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제1항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제4항중 “수도 계량기”를 “계량기”로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항중 “가정용2종”을 “가정용”으로 “계산”을 “계산하고”로, “기본요금”을 “요금”으로하며 “가구에 한한다”를 “가구를 말한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 때에는 이전 3월 사용수량의 평균치와 수도미터기를 교체한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제2항중 “전항에”를 “제1항에”로 “계량법상의”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로, “그 월분의”를 “당월분의”로 하고 “지정한 그 월분의”를 “조정한 당해월분의”로 하며 제3항중 “의한”을 “의한 사용자의”로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를 “시험요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국가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중 “익월 말일까지”를 “익월 말일까지 요금고지서에 의하여”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부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중 조명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을 “구경별 정액요금을”로 하며 제2항중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을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으로 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33조(가산금)제1항중 “급수장치 손료를”을 “구경별 정액요금을”로 하고“납기”를 “납부”로하며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를 삭제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4조(납부고지)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요금고지서 및 독촉장은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전월분”을 “전월분까지 발생한 총”으로, “포함하여”를 “미수액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종료후”를 “급수 종료후”로 하고, “고지서”를 “요금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수수료)중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를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제1호중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로 하며 “가 내지 나를 “삭제”하고 제2호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시공자재”를 “시공자재 및 준공”으로,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중 “제32조 제3항”을 “제30조 제1항”으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4호중 “제43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제1항 제1호중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삭제하고, 제2호중 “설치한다”를 “설치한자”로 하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감면”을 “수도요금을 감면”으로 하며 “ 그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급수표지)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건물”을 “물건”으로 한다.

제40조(정수처분)제1항 제1호중 “2개월”을 “2월”로 하고 “아니한자”를 “아니한 자 및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

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중 “부담으로 수리”를 “부담으로
군수가 수리”로 한다.

제42조(과태료)중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제2항중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중 “읍,면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등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
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2조 제1항 관련)

계 량 구 경 별	분 담 금 액 비 고	비 고
13mm	120,000원	
20mm	330,000원	
25mm	580,000원	
32mm	1,060,000원	
40mm	1,790,000원	
50mm	2,860,000원	
75mm	5,930,000원	
100mm	10,120,000원	
150mm	22,050,000원	
200mm	31,300,000원	
250mm	42,260,000원	
300mm	52,730,000원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6조 관련)

(단위 : 원, 톤)

업종별	사 용 량	요 금	비 고
가정용	0 ~ 10	150	
	11 ~ 20	210	
	21 ~ 30	270	
	31 ~ 40	330	
	41 ~ 50	430	
	51 이상	570	
업무용	0 ~ 20	310	
	21 ~ 50	350	
	51 ~ 100	390	
	101 ~ 300	430	
	301이상	500	
영업용	0 ~ 30	350	
	31 ~ 50	420	
	51 ~ 100	590	
	101이상	790	
육탕용1종	0 ~ 200	330	
	201 ~ 300	460	
	301 ~ 500	630	
	501이상	740	
육탕용2종	0 ~ 200	430	
	201 ~ 300	700	
	501 ~ 1000	800	
	1001이상	1,000	
전용공업용	0~100	570	
	101이상	790	

(별표 3)

업종별 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공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 보훈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단체),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및 지사무소 ○ 사설 소화전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자동차정비,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공업, 음식점,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식품제조 가공업, 냉장, 냉동, 제빙업, 기타지방자치단의장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옥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목욕장업
옥탕용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설치된 배수관에 의한 공업용수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제32조 관련)

계량기구경별	요액	비고
13m	500원	
20m	910원	
25m	1,560원	
32m	2,810원	
40m	4,090원	
50m	6,740원	
75m	14,000원	
100m	23,310원	
150m	50,150원	
200m	70,430원	
250m	97,550원	
300m	120,970원	

(별표 5)

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제42조 관련)

위반내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철거명령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장치 철거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3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1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 이행 할 때까지 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7. 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5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종전 처분에 의무이행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 위반		10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p> <p>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있다.</p> <p>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p>	<p>하는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 급수구경 75밀리미터이상 건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p> <p>② 군수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p> <p>제6조의 4(중수도설치 신고 및 확인)①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군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p>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교부한다.</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같음)</p> <p>② -----관급으로 함-----</p> <p>-----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자재를 검사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수 있다</p> <p>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p> <p>----- 요청 ----- 준공검사를</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이하“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 (생략)</p> <p>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원</p> <p>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000원</p> <p>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 1건당 2,000원 갱신 : 1건당 1,000원</p> <p>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실시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준공검사 입회를 원할때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공사를 대행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자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10,000원</p> <p>2. ----- ----- 5,000원</p> <p>3. ----- ----- 100,000원, -----50,000원</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p> <p>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p> <p>①-----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부담한다. 단, 증설(급수관의 구경</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생략)</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u>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u>로 한다.</p> <p>② 전항에 지정된 (이하 생략)</p> <p>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u>균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u></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② (생략)</p> <p>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u>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균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p> <p>(신설)</p>	<p><u>확대)공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u>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수수료 (자재검사, 준공검사수수료등 포함)등의 합계로 한다.</u></p> <p>② 제1항에 규정된 (이하 현행과 같음)</p> <p>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삭제)</p> <p>(삭제)</p> <p>제11조의 2(원인자 부담금) ① 수도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 부</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이하 생략) ② (생략)</p>	<p>담금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시설 :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집단개발 주택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m²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 원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 유통시설 : 건축 연면적 1,000 m² 이상 6. 기타시설 : 건축 연면적 2,000 m² 이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 <p>②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균수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균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설분담금)①----- ----- ----- ----- -----제11조 규정의 (이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u>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수 없다.</u></p> <p>② (생략)</p> <p>③ <u>공설공업급수장치에 의한</u> 급수 판매가격 (이하 생략)</p>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u>공설공용급수 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에서는 판매할수 없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① (생략)</p> <p>② <u>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u> (이하생략)</p> <p>③ (생략)</p> <p>④ <u>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u> (이하 생략)</p>	<p>제21조(사용자의 관리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매설 또는</u> ----- (삭제)</p> <p>(이하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동거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u>(이하 현행과 같음)</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략)</p> <p>② <u>전항의</u>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생략)</p> <p>② <u>전항의</u> 급수정지 (이하 생략)</p>	<p>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u> 급수정지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u>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u>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이하 생략)</p> <p>② <u>급수의 중지는 3개월</u>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연장 (이하 생략)</p>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 -----<u>수도요금</u>----- ----- (이하 현행과 같음)</p> <p>② -----<u>3월</u>----- ----- (이하 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라. (생략)</p> <p>마. (생략)</p> <p>바. 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요금) <u>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 - ② (생략)</p> <p>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가 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월 사용량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p> <p>1. 월 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 15m³을 합산한 량 보다 많을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m³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삭제)-----3월-----</p> <p>제25조(요금의 징수) ①<u>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요금) <u>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 (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m³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m³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의 사용량으로 한다.</p> <p>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 (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수도 요금은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 - ③ (생략)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이하생략)</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량기---(이하 현행과 같음)</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2종 요금을 적용하고 단일 주계량기로 공동주택의 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사용량을 입주 가구수로 나누어 수도요금을 계산 미입주 주택(호)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u>가구에 한한다.</u></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가정용----- -----계산하고----- -요금----- -----가구를 말한다.</p>
<p>(신 설)</p>	<p>③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생략)</p> <p>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지정한 그 월분의 (이하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이하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 사용수량의 평균치와 수도미터기를 교체한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p> <p>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당월분의-----조정한 당해 월분의(이하 현행과 같음)</p> <p>③ -----의한 사용자의 -----시험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수 있으며(이하 현행과 같음)</p>
<p>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익월 말일까지 요금고지서에 의하여 ----</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p>	<p>③ 납부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구경별 정액요금을 -----</p> <p>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p>
<p>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3조(가산금) ①-----구경별 정액요금을-----납부----- (삭 제)-----</p> <p>-----그러하지 아니한다.</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u>의하여 징수한다.</u></p> <p>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u>가름할 수 있다.</u></p> <p>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p>	<p>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고지서 및 독촉장은 <u>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u></p> <p>(삭제)</p> <p>②전월분까지 발생한 총 <u>미수액을 포함하여</u> -----</p>
<p>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생략)</p> <p>②전항 규정에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u>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u></p>	<p>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 ----- <u>급수종료후</u> -----</p> <p>-----</p> <p>----- <u>요금고지서에</u> -----</p> <p>---</p>
<p>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u>해당하는 자료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설계 수수료</u></p> <p>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p> <p>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p> <p>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u>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u></p> <p>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시공자재 검사 수수료</u></p> <p>가 - 나 (생략)</p>	<p>제36조(제수수료) ----- <u>해당</u> -----</p> <p><u>하는 사항에 대하여는</u> -----</p> <p>-----</p> <p>1. ----- <u>급수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u></p> <p>(삭제)</p> <p>(삭제)</p> <p>2. --- <u>제3항</u> --- ----- <u>시공자재 및 준공</u> -----</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삭 제)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 제30조제1항의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4. 제40조-----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생략)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 <u>수도요금</u> <u>의 100분의 30</u>	1. ----- : (삭 제)
2.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중수도를 <u>설치</u> <u>한다.</u>	2. ----- ----- <u>설치한 자</u>
② 전항 규정에 의하여 <u>감면</u> 을 받고자 하는 자는 <u>그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u> <u>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u> (이하 생략)	② 제1항----- <u>수도요금을 감면---</u> <u>----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u> <u>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하 현행과 같음)
제39조(급수표지) ① (생략)	제39조(급수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u>건물의</u> (이하생략)	② 제1항 ----- <u>물건--</u> (이하 현행과 같음)
제40조(정수처분) ① (생략)	제40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 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2개월 내에 납부 하지 <u>아니한 자</u>	1. ----- ----- <u>2월 -----</u> <u>-- 아니한 자 및 수수료, 공사비 기타</u> <u>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내에</u> <u>납부하지 아니한 자</u>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급수 중지후 이를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수수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 ----- -----부담으로 군수가 수리 -----</p>
<p>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정하는 외에 별표5에 의한 기준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신설)</p>	<p>제42조(과태료) ----- -----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 ④ (생략)</p>	<p>제43조의2(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5,000만원 -----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46조(권한의 위임) ----- ----- -----상수도사업소장-----</p>